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일시 | 2016년 5 26일(목)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
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 |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T.02-313-1632 / F.02-313-1649

E-mail : kwau@women21.or.kr

트위터 : @kwau38 / 페이스북 : /kwau38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6 여성미래센터 501호

순서

	시간	프로그램
1 부	7:00-9:00 (120분)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 발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 '여성혐오'의 보편성과 특수성 -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혐오, misogyny, 젠더폭력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법개념과 사회적 의미, 법규제와 사회적 대응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여성운동 현장에서 본 여성폭력·살해 실태와 운동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OO녀'는 어떻게 탄생하고 죽어가는가 - 한국 언론의 젠더의식 부재 - 최지은 [아이즈] 선임기자
		2 부

목 차

- 우리 사회 ‘여성혐오’의 보편성과 특수성 1p
-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혐오, misogyny, 젠더폭력 3p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법개념과 사회적 의미, 법규제와 사회적 대응 11p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화장실법 개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우리 여성들은 ‘두려움’을 넘어 ‘연대’하며 힘을 낼 것 15p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여성운동 현장에서 본 여성폭력·살해 실태와 운동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19p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착취와 폭력의 현장에서 ‘살고싶다’는 여성들의 소박함에 대하여 23p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OO녀'는 어떻게 탄생하고 죽어가는가 - 한국 언론의 젠더의식 부재 26p
- 최지은 [아이즈] 선임기자

우리 사회 ‘여성혐오’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여성혐오’(misogyny)

· 가부장제 사회의 기초, 성차별적 문화와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 남성으로서의 성적 주체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 멸시를 정체성의 핵심 깊은 곳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여성혐오’이다(우에노 치즈코)

· 여성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자율성을 부정하는 대상화(objectification)(누스바움)

최근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유지 기제. 역사는 유구하며,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시대적으로 보편적인 현상 : 여학생이 사 오원이나 하는 비단양말을 신고 자랑스럽게 다니더라/ 이대생은 하이힐을 벗고 단화를 신으라(김치년 백년사) / 스타벅스 가는 여자가 된장녀인 이유 / would love to rape you, it's a banter

현실 사회에서의 폭력, 공공연한 차별, 혹은 구조적인 차별과 차별적 언행, 성에 기초한 폭력이 만연할 수 있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정서적인 구조

이 정서는 개개인을 통해 체화되어 현실에서 ‘실천’됨.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은 같아도 ‘생활 세계’는 다름. 대중교통, 공공화장실, 도로, 복도 등등은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경험을 주는 생활 세계.

생계부양을 전제로 하는 가부장제적 헤게모니 ‘남성성’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 정서와 생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혐오’ 행위들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음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현재 한국에서의 문제 1 : ‘여성혐오’는 여성의 시민권 부정을 핵심으로 함

· 시민권 부정 : (군대로 대표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 여성의 권리 주장은 ‘떼쓰는 것’이 되어 버림

· 성적 시민권의 부정(성녀/ 창녀 이분법의 작동). 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 부정

· 피해자성의 전유 : 평등 개념의 전유를 통한 ‘역차별’ 주장 / 세대별 차별 주장 등 남성의 피해자성 구성. 특히 연애를 문제화하는 양상. “여자 안 믿어요, 여자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 아다 스웁”. 이성애에 실패한(혹은 아직 이성애를 경험하지 않은 10대/20대) 남성들이 왜 자신이 ‘여성’으로부터 피해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남성성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인 ‘여성’을 차지하지 못하여 남성성을 수행하지 못한 이등 존재가 된다. 이 책임을 여성에게 귀인/ 인터넷을 통해 10대에게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되어) ‘경험’됨(청소년기의 성평등 교육이 중요해지는 이유)

현재 한국에서의 문제 2 : 인터넷 문화, 저널리즘, ‘여성혐오’

· 한국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이는 사회적 무의식이 집단화되고 가시화되는 계기를 마련함

· 포털 중심의 인터넷 구조는 빠른 전파와 수렴을 촉진.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로의 이동은 동질적인 그룹 내에서의 의견 동질화 현상 촉진. ‘혐오’를 중심 동인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그룹들의 확산 (집단 극화)

·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과 책임 없는 저널리즘

- 누군지 / 실제인지 알 수 없는 ‘네티즌’의 의견. 형식적 객관주의 유지

- 저널리즘의 책임은 공공선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 구성과 해석을 해주어야 하는 것. 그러나 현재 한국의 언론은 성평등, 여성혐오와 관련된 사안을 (사실상 주어진 권력이 동등하지 않음에도) 동등한 주체간의 갈등으로 보도하면서 양 측의 의견이 모두 동등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도하여, 주장을 사실화하거나 윤리적 위치와 정당성이 다른 두 의견을 서로 동등한 의견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시함(‘여성혐오’와 소위 ‘남성혐오’의 동등한 배치)

- 수많은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기인한 현상, 주장, 의견들이 아무런 해석도 의미화도 없이 그저 실재 존재하는 것이어서 ‘사실’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 인터넷에서의 ‘여성혐오’ 놀이화

- ‘여성혐오’ 온라인 표현의 대부분은 재치 있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유통됨. 재미는 모든 것을 합리화 할 수 있음.

- 유머는 ‘여성혐오’를 표현의 자유이자 패러디를 경유하는 예술의 자유로 포장하는 기법 (오! 빠따 뽑았다 널 때리러가)

- ‘여성혐오’ 유머는 여성에 대한 공격과 폭력을 유머화하여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소하게 하며, 당연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제적 폭력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음.

·연대가 중요해지는 이유

- 서구의 경우, 온라인 ‘여성혐오’의 경우에서도 특정 여성에 대한 공격, 강간 위협 등이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났음. 이는 포털이나 거대 커뮤니티처럼 대중적으로 의견을 집합하고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임. 2010년 이후,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여성혐오’의 진원지로 지목된 것은 페이스북이 대중이 구독할 수 있는 혐오 페이지 개설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임

한국의 경우, 포털과 커뮤니티(일베 및 기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 일반에 대한 ‘여성혐오’가 일종의 정서구조화되었음. 그리고 2015년 이후, 여성 개인에 대한 공격이 가시화. 페이스북과 트위터처럼 특정한 식별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에서 여성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포털과 온라인은 물론,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침범하게 된 것. “클릭하지 않으면 모르는 곳(일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경험은 과거에도 있었음. PC통신 시기 여성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이 심각했고 군가산점제 논란 이후 이는 공격적 메시지로 변모. 월장 사태에서도 여성을 온라인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공격하는 형태. 이러한 개개인의 일상에 대한 위협은 집합적으로도 여성의 발화를 막는 효과를 나타냄. 연대를 통해 생활 세계의 침해를 막아야. “고립되어 혼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나누어 계속 싸울 힘을 주는 것이 연대”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혐오, Misogyny, 젠더폭력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한 여자가 죽었다. 어쩌면 내가 갔었을 앞으로도 가게 될 공간에서 한 남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조현병이라는 알리바이로 각색된 그 남자의 살해 동기는 “평소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서”였다고 한다. 무시라는 언설을 들여다보자. 무시는 행위다. 아버지들은 늘 어머니를 무시한다. 조금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여자가 뭘 안다고”라며 소리 지르고 욕박지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시당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한 마디만 해도 “네가 나를 무시해서 그래?”라며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언어화하고 대응적 행위를 한다. 남자들은 자신의 아버지, 상사, 선배 등으로부터 훨씬 많은 폭력의 대상이 되나 무시당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내며 증오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냥 참는다. 무시당했다고 공적인 장에서 표현하지 않는다. 교수는 학생에게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공격 발화를 할 수 있지만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 뒷담화 속에서 기분 나쁘다고 욕할 수는 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이와 연루되는 굴욕감, 언행을 통한 분명한 대응(reaction)은 적어도 권력관계가 동등하거나 대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성차별 사회에서 여성을 일상 속에서 무시해 온, 무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무의식적 리액션이다. “평소 여자들이 무시해서”라는 언설은 “평소 내가 무시해 온” “여자들이 감히 나-남자를 무시”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의 다른 표현이다. 표현은 우월적 지위의 상징이자 도구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 수많은 포스트잇에 토박토박 새겨진 언어들, 길거리에서 외치는 성폭력 경험들은 실은 여자인 내 몸 곳곳에 새겨진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하는 것이자 해석의 과정이며, 어쩌면 미래에 닥칠 나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평가받고, 배제당하고, 차별받으며 성희롱의 대상이 되며 강간당하고 죽어 왔지만, 표현하지 못한 나-그녀들의 경험이 소환되는 자리다.

최근 <곡성>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동시에 동일 감독의 영화 <추격자>가 재조명되고 있다. 처음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와 다름없이 “정치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외피를 입고”(배은경, 2010: 143) 예술성과 상업성 면에서 상찬을 받고 있다. 화면으로 추격자의 주요 장면을 다시 만나게 된 나는 동요하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영화적 완성도를 차치하고 당시 내가 가장 불편했던 것은 여성을 향한 분노와 혐오가 범죄로 이어지는 장면을 끔찍할 정도로 상세히 묘사했음에도 결론은 순진한 얼굴의 광기어린 사이코패스의 분열적 행위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무엇보다 그들-남성들-간 선과 악의 대결구도(남성 짝패 구도)에서 어쩌면 ‘운 좋게’ 조금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보호받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여성의 운명이 처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배은경(2010)이 이미 적절히 지적했듯,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이라는 프레임은 “범죄를 탈맥락화, 탈역사화 시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봉쇄한다. 그는 다이아나 러셀이 제기했던 “페미사이드”(femicide), 즉 “여성혐오적 살인”(misogynist murder)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죽은 자, 죽을 자, 죽을 수 있는 자” 여성에 대한 위치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남녀의 평등한 인격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을 섹슈얼리티로 환원하는 담론이 공론장을 지배할 때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환기되고 또 발생했다는 역사적 우연”이(143)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우연적인가?

#2012년 9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2 대한민국 여성, 불안을 말하다 - 절망범죄와 여성폭력”이라는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당시 오원춘, 김점덕, 서진환, 고종석 사건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

력, 살해 사건에 대한 대응방침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당시 필자는 신자유주의 시대 새롭게 구성되는 공포정치 문제와 기존의 이데올로기들-여성혐오, 인종혐오, 동성애혐오 등-이 결부되어 특정 집단을 향한 극단적 행위양상으로 발현되는, 될 수 있는 상황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이 생애적으로 나약한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인종,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관습이 결부될 때 피해자화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해자를 악마화, 병리화시켜 종별적 타자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진단과 대책들은 기존의 차별적 젠더질서를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필자는 이를 발전시킨 논문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이나영·허민숙, <가족과 문화>, 2014, 제26집 4호, 58~90)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요소들이 전형적 남성성 구축 양식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차단한 채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공포가 재생산되고 표출되는 방식에 문제제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성차별 사회의 새롭게 많은 젠더폭력의 양상들, 이를 통한 여성 전반에 대한 통제와 규율효과는 역설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성폭력 재현 연구(“성폭력, 누구에 대한 어떤 공포인가?” <미디어, 젠더 & 문화>, 2015년 30권 2호, 1-34)에서 필자와 공동저자, 김은경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주류 언론이 어떻게 성폭력을 재현하는지 살펴 본 결과, “첫째, 무수한 성폭력들의 양태들은 가려지고, 불행한 과거를 가진, 혹은 소외된 계층의 ‘비정상적인’ ‘병리적인’ 낯선 일탈자들만이 가해자로 남게 된다. 이로 인해 공/사 구분에 따른 공간의 안전감에 대한 통념도 재생산된다...미디어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여성]이 더욱 용이하게 범죄 희생자가 된다는 기존의 가부장적 해석들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공적인 공간은 생산의 영역이며 이에 관여하는 남성을 위한 장소이자 치열한 경쟁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인 반면, 가정은 소비의 영역이며 여성을 위한 장소이고 위험한 외부세계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천국과 같은 곳[-결국 여성이 안전한 공간은 가정-]이라는 기존의 통념이 강화된다. 젠더화된 공간과 성별이데올로기, 성폭력 간의 긴밀한 동맹관계가 확인되는 것이다. 둘째, 비정상적인 특수한 가해자 개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태도,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차단하고, ‘어쩔 수 없는 불운’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피해임을 암시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대처 불가능성, 이로 인한 무력감과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의존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상한’ 낯선 남성들의 예측 불가능한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시 ‘일반’ 남성 보호자에 의존하는 방법 이외에 없다는 사실이 암시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폭력 문제는 역설적으로 남성과 남성 주체 간의 정치적 [협상의] 문제로 환원된다.” 이로써 제시되는 정책적 대안들의 문제는 “첫째,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와 ‘자기방어 능력이 있는데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피해자’라는 기존의 이분법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전형적’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건과 대상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유발한다. 즉, 피해의 치명성이 엄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법 감정’에 호소되지 않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어렵게 된다. 셋째, 위험인자를 지닌 종별적 존재에 대한 관리와 감시, 사회적 격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등 문제의 소지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범죄자(유형)를 사회적으로 고립, 배제시킴으로써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재생산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불평등한 젠더관계 등 성폭력의 원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봉쇄된다는 점이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분석은 일시적이지도, 계시적이지도, 우연적이지도 않은 오랜 이론과 운동의 전통에서 유래한 페미니스트 분석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열흘 가까이 되었다. 경찰의 결론과 주류 언론의 상당수는 “묻지마 살인사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인가, ‘여성혐오 범죄’인가?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과 여성혐오라는 현상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여성혐오는 최근의 현상인가? 혐오표현은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져 빠져나온 돌연변이인가? 만약 두드러져 보인다면 왜 그러한가? 강남역 10번 출구의 무수한 포스트잇과 자신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필리버스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성갈등, 성대결, 심지어 젠더전쟁인가? 이는 사실 지난 일주일 간 필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모아 본 것이다.

1. 진단

이번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살해 범죄(femicide)’다. 그러기에 여성들에게 이 사건은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일상의 편견, 무시, 비하, 멸시, 조롱, (성적) 대상화, 괴롭힘, 혐오발언, 제도적 차별, 폭력, 강간, 살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읽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는가. 필자는 성차별(sexism, misogyny)적 구조 속에 내재된(구조의 지지기체인) 제도화된 부정의로서 ‘혐오’의 구성과 표출 방식에 주목한다.

1) 잘못된 문제설정 구조와 대책

○ 언론의 프레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악마화 또는 병리화) vs. 여성혐오 범죄 → 남녀 갈등, 성대결(남성혐오 vs. 여성혐오): 둘은 병렬적 관계이거나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성차별적 사회에서 일상에 일어나는 여성혐오적 현실이 망상을 구성하고 행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이분법적, 병렬적, 배타적 프레임 지속. 갈등은 적어도 동등하다고 믿어지는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 이제야 여성들은 남성들의 구조적, 우월적 지위에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공기처럼 누렸던 특권들, 이에 기반한 언행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그나마 아주 희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이 느꼈던,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의 존재, 그 불편함을 구성한 차별적 구조를 인지했다기 보다 자신의 보이지 않던 특권들, 이에 기인한 폭력적 언행들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위계적 젠더질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신의 일상적 사고와 행동을 부정하면서 분열증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 경찰의 진단과 대책¹⁾: 조현병 환자의 “비의지적 행위”이므로 “여성혐오” 범죄라 보기 어려움 → 특별한 ‘중자’의 개별적 범죄 행위 → 안전 프레임의 제한적 대책(“3개월간 여성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 ‘스마트 워치’ 지급, 정신병자 관리대상) 정형화된 젠더 역할과 이데올로기 재생산(보호의 대상-여성, 보호하는 국가) &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낙인과 제거 담론(감금, 관리) → 다시 봉쇄되는 차별적 구조에 대한 질문, 위장된 평화 유지 → 가부장 국가의 안정적 지위 유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여성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한 성차별 사회 스킴조프레니한(분열증적) 작인들의 칼춤이 아닐 수 없다.

2) 혐오란 무엇인가? 위계적 젠더질서와 혐오(hate, disgust)의 역동적 구성

한국어 사전에서 ‘혐오(嫌惡)’는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함’이라 정의되어 있다. 감정적, 비인지적, 무의식적 요소가 강조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구조의 기저일 가능성도 열어 놓는다. 그러나 이를 문자 그대로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자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더군다나 감정/인식/구조가 변별화되어 있다고 믿을 경우, 반동의 빌미를 준다. 많은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 위치를 거부하면서 꺼내는 카드인 “나는 여자를

1) 강신명 경찰청장은 (2016년 5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 범죄 및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혐오는 의지적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발생 열흘 전 김씨가 본인이 일하던 장소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고자질한 것으로 소위 망상을 하게 돼 피해의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진술 내용도 있다”면서 “실체가 없는 망상으로 인한 범행을 혐오범죄로 보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청장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여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까지 3개월간 여성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범죄에 취약한 지역과 위험 인물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순찰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또 신변 위협을 받는 여성들에게 위험 상황을 곧바로 경찰과 가족 등에게 알릴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행정 절차를 거쳐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 조치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민중의 소리, 2016년 5월 23일 <http://www.vop.co.kr/A00001026660.html> 2016년 5월 25일 검색).

싫어하지 않아”라는 언설, 강 칭장의 “혐오는 의지적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한국말에 해당하는 혐오에는 dislike, hate, disgust(불쾌감, 혐오), loathing, revulsion, aversion 등 다양한 양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번 사건에서 떠 오른 ‘혐오’라는 개념은 이처럼 다양한 층위와 양태를 포괄한다는 의미다.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성차별적 사회의 남성성 구축방식과 다양한 혐오의 양태에 대해 연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신분석학자인 Nancy J. Chodorow(낸시 초도로우)가 있다.

혐오(hate)라는 감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Nancy J. Chodorow(2012)는 남성들은 생득적으로 폭력적인가(violent)라고 질문하면서, 호르몬에 따른 생물학적 공격성(aggression)에서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음을 먼저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증오의 감정은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된다고 보고, 남성성에 주목하면서 남성들의 혐오(증오 hate)와 굴욕감(humiliation)이 여성혐오 문화misogyny와의 연관성 속에 역동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발견한 대체적인 공식은 굴욕감(무시당했다!) → 증오 → 폭력적 행위로 이어지면서 표출된다(9·11 등 테러문화의 예). 흥미롭게도 그는 굴욕감이 증오의 표현과 행위로 나타나는 과정을 여성혐오에 기반한 남성성의 구성방식과 연결시킨다. 초도로우는 건강한 주체는 좋은 것, 나쁜 것을 자아와 대상(self-other)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성차별, 젠더위계 사회에서 남성은 자아와 대상 분리를 통해 남성성을 구성하게 되는데, 즉, 헤게모니 남성성과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성/주체 안의 더러움, 나약함 등을 여성성이라 이해되는 ‘나쁜 것’들은 모두 대상에 투사, 분리한다(self/other) 이로써 남성은 “paranoid-schizoid splitting and projective identification (편집증-정신분열적 분리와 투사된 동일시)”의 특징을 지니게 되고 분열증적으로 찢겨진 주체 성향을 내면화한다(그래야 인정받고 살아남는다!).

이는 피해망상 불안(persecutory anxiety)을 일으키고 “온전히 좋은 것으로서의 자아”(all-good self)를 이해하기에 대상에 투사된 ‘나쁜 것’에 의한 공격을 참기 어렵게 한다. 애써 분리한 대상(타자)에 의한 자아에 대한 공격이라 이해하기 때문이다(126).

다시 말해 남성성의 심리적 단층선(psychic fault line)과 남성의 자아감(selfhood)은 두 가지 발전과 판타지 요소를 표현하는데 첫째, 남성다움(maleness)은 비/반-여성다움(not-female)이므로 남성 자아(male self)는 방어적으로 대상(the other) 분리/대상 회피를 해야 하며, 증오(hatred)가 커질 때 방어적으로 자아와 대상(other) 간 분열이 극심해진다. 둘째,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자신이 굴욕감을 느꼈다거나 수치심을 당했거나 다른 남성에게 의해 패배했다거나 할 때 자아에(자신이 방어하고자 하는 자아의 한 요소)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응(react)한다는 것이다(2012: 135).

심지어 집단에 대한 굴욕감이라 느낄 때는 집단적 행동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ideological legitim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 (좋은 것, 그래서 지켜야 할 것) 대 ‘그들’(나쁜 것, 공격의 대상, 적) (us vs. them)로 분리하여 집단적 분리와 투사, 공격, 공격의 정당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이로써 타자(대상 object)에 의한 위협감과 위협(threat & danger)은 공격성과 실질적 공격(aggression & attack)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127).

이러한 현상에 대해 초도로우는 이미 2002에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혐오적 폭력을 남성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폭력, 남성성의 폭력(masculine violence)이라 지칭한 바 있다. 생물학적 여성/남성과 무관하게 자행되지만 결국 같은 기제에서 출발한다고 보기에 포괄적이다.

유사하게, 그러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너스바움(2015)은 혐오(disgust)라는 감정의 사회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여성과의] 섹스 그 자체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자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여성이]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을 지니고 있다”는 인간의 오랜 믿음, 즉 여성혐오와 인간혐오의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된 개념적 연계 고리를 지적한다. 그는 혐오가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천이 구체화되는 것”과 연관되므로(377), 남성이 여성의 몸에 혐오를 느끼는 것은 그것이 남성 자신의 구현이자 동물성과 유한성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258). 전통적으로 지배집단은 자신이 지닌 “동물성과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과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집단이나 사람에게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들을 배제하고 주변화해” 왔다(37). 원초적 혐오 감정이 사회적 혐오로 확대, 재구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타자에 투사된 혐오가 “우리를 실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377)는 점이다. 이처럼 주변화된 타자의 몸을 통해, 혹은 타자를 주변화함으로써 구현된 혐오는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기 힘든 우리 자신에 관한 사실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기만적 감정”이자(378) 자기분열적 기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남성성-자아의 기만적 통일감 유지를 위해 타자를 향한 집단적 혐오가 구성되고 혐오 표현과 실천이 정당화되며, 이를 통해 다시 차별적 구조와 폭력이 지지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자아/대상은 주체를 구성하는 한 쌍이므로 여성에 대한 혐오의 표출은 결국 자아에 대한 공격이 되고 주체는 스스로 내파된다는 점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 분리(자기 분열)로 가야만 하는 슬픈 남성성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비대칭적 젠더질서에서 형성된 젠더규범(남성성/여성성)을 스스로 해체해야만 가능하다.2)

이번 사건에서 남성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비굴, 비열, 무지, 분열증, 교활로 나뉘지는데 언론과 공적영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일부 남성들의 격렬한 반응은 그 자체가 성차별 사회의 징후다. 앞서 논의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이들이 보인 행태는 남성(성) 권력의 스펙타클 속에서 헤게모니 남성성과 동일시를 통한 (과잉) 방어적 자아유지 전략이며, 남성연대(male bonding)의 소구이기도 한 것이다. 남성위계사회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살 수 있는 슬픈 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야기한 근본적 사회불평등 구조를 보지 못하는/보지 않으려는 무지, 비굴함이 결국 자신이 속한 위계적 조직의 하층 구조를 단단히 한다는 점이다. 결국 그들이 보호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헤게모니 남성성이자 위계적 권력 구조의 최상계층 남성이며, 위계적 차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 남았다고 여겨지는 특권, 젠더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과잉 자기방어적 행동은 결국 자아의 내파를 초래하기에 더욱 치참하다.

3) 젠더폭력으로서 여성살해 범죄(femicide)

○ 젠더폭력?

오랫동안 여성운동계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여성이기에 겪는 다양한 폭력을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라 명명해 왔다. 젠더폭력은 “여성들이 특히 많이 경험하는 폭력의 형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나 여아가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성별위계질서에서 배태한 폭력이자 남성(성)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폭력(men’s power over women)”이다. 이번 사건이 젠더폭력인 이유는 성차별적 사회 속에 구성된 “남성성/여성성의 위계적인 젠더 (물리적, 상징적) 질서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폭력”이 되기 때문이다(이나영·허민숙, 2014: 82-83). 그러나 젠더폭력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 영아살해, 인신매매, 성희롱, 성매매, 구타, 강간 등 다양한 양태들을 포괄하는 용어이기에 정치적이긴 하나, 동시에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상징적, 구조적 폭력의 구성과정과 연계고리를 이해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이론적 개념이기도 하다.3)

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필자가 다른 발표문과 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다(2012; 2014: 74쪽).

3) 최근 페이스북에 떠도는 젠더폭력의 피라미드 구조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의 구성가능성을 암시한다.
<성차별 구조 속의 젠더폭력>

제노사이드(genocide)

따라서 필자는 이 사건을 성차별적 구조(sexism, misogyny)에서 제도화된 혐오, 이에 기반한 젠더폭력이 극대화된 형상으로서의 여성살해(Femicide, Misogynist murder)로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Jill Radford(1992)는 “여성 살해: 여성 살해의 정치학(Femicide: The Politics of Women Killing)”(1992)에서 이미 남성에게 의한 여성혐오적 살해행위를 언급하면서 범죄심리학의 성맹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성판매 여성에 대한 연쇄살인사건들을 분석하면서 여성은 범죄자뿐 아니라 경찰, 법원, 대중에 의해 다시 피해자화 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다시금 남성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성적대상으로 재현되고, 여성은 유혹적이며 동시에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억압해야 한다는 담론이 지지된다(Radford, 1992: 240). “Age of Sex Crime”에서 Caputi (1997)는 여성살해는 해석불가능한 정신이상자, 이탈자(deviant)에 의한 행위결과물이 아니라 가부장적 역할, 가치, 욕구, 힘의 규칙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단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쇄 살인은 남성 우월성의 주된 원리를 행하는 것(enact)이자 메리 데일리(Mary Daly)가 처음 명명한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전통의 최신 버전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때 제노사이드란 남성에게 의한 조직적 여성 침해(심각한 정도의 손상을 입히는), 강간, 살해로 우월적 젠더 계급의 남성에게 의해 잔혹하게 저질러지는 행위다. 이는 임의적, 우연적으로 발생하는(randomly occurring)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더 나아가 문명의 주된 테마 속에 체현된 남성의 감각 속에서 발생하며 심지어 문명의 위기를 반영한다(Caputi, 1997: 3).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젠더폭력과 여성살해의 가해자/피해자들이 사회질서의 산물임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문제는 그러한 젠더폭력과 여성살해라는 현실이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집단으로서 여성에 대한 자기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된다는 점이다. (예: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일찍 일찍 다녀라, 조심하라고 그랬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여자니까 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기회를 살해, 강간에 대한 법 규정과 별도로 오랜 여성혐오 사회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수많은 차별적 기제들, 결과적 효과들을 보다 격렬하게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추모’열기와 ‘필리버스터’: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그렇다면 서구 페미니즘의 역사 속에는 오래 전부터 의제화되어 왔던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의 이야기가 왜 이제야 우리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가? 1980년대부터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의제화했고 법제화로 이어진 이 문제가 왜 이제야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는가? 왜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개별적 성폭력 경험을 공적 공간에서 고통스럽게 발화하고 있는가? 이에 응답하듯 수많은 여성들의 고백행렬이 온라인에 넘쳐나는가?

○ 들리지 않았던 이유: 순결한 여성/장녀라는 전형적 이분법에 의해 ‘절대적 피해자상’만이 적절히 보호받을 만한 여성 자산에 대한 침해로 보아 젠더폭력의 심각성 환기에 도구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여성동일시에 실패. 여성단체의 아젠다 설정에 마뜩찮게 끌려오는 언론과 시민들. 그 자체가 깊고도 넓은 성차별 구조의 뿌리를 방증한다.

○ 새삼 지금?

1) 대중적 공간에서 ‘일반’ 여성에 대한 살해. “나도 당할 수 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극단적 폭력 (acts of extreme violence to the individual)
폭력적 행위 (acts of violence)
차별적 행위 (acts of discrimination)
편견과 편협함을 드러내는 행위 (acts of prejudice and bigotry)
교묘한 선입견을 드러내는 행위 (acts of subtle bias)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공포, 경험을 돌아보고 가시화되게 된 계기

2) 다른 여성들의 경험에 공감하는 청중의 탄생

○ 공감된 청중의 탄생 배경과 의미

오랜 여성운동의 성과로 가꾸어진 토양, 가족주의의 역설, 대학에 진학하여 처음 불평등과 맞닥뜨린 젊은 여성들, 차별의 체감, 메갈리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몸만들기(부당함을 인지하는 시각, 공감(공-사의 연결성,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지지와 연대의 가능성 확인, 부당함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이에 제동을 거는 능력을 신장시켜 옴, 오프라인으로 나와 차가운 현실에 당당히 맞섬(두려움에 기인한 침묵과 방조는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인식), 제도화된 합리적 언어의 영역에서 이름 없던 부정의를 명명하는 새로운 어휘의 창조(여성혐오 범죄), 대항적 하위공론장 구성, 불편부당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 주도, 제도화된 부정의에 대한 반성적 비판과 변화 유도, 여성 살해에 대한 새로운 프레이밍 주도, 불편함과 ‘경기’ 유발을 통해(명확한 전선 구축) 자기성찰적 집단의 재구성.

“사실상 부정의에 대항하는 모든 획기적인 투쟁은 이전에는 이름 없던 부정의를 또박또박 표현하는 새로운 어휘의 창조를 포함해 왔다. ‘데이트 강간,’ ‘성희롱,’ ‘이부제the double shift’와 같은 표현을 창안했을 뿐 아니라 의식을 고양하는 어언 게임도 창안했다. 2세대 페미니즘(2nd Feminism)의 전형이나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종종 주류 공적 영역에서 처음에는 경청될 수 없는 새로운 요구 해석과 상황 정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대항적 하위subaltern 공론장을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자신을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다”(프레이저, 2016/2008: 516). 일반적 시민운동이 그러하듯, 이들의 운동이 만약 공적으로 명명 가능한 부정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공적 이성의 프로토콜 역시 변화”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했던, 불편부당성, 객관성, 당연함에 대한 이해 또한 변화할 것이다.

물론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 일상의 불편함 및 불안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에게 불편함과 불안을 야기하는 방식이 결국 공기처럼 누렸던 우리들의 보이지 않은 특권들을 조각내 해체하는 작업과 연결될 때만이 비로소 완수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다. 비로소 젠더정치학이 한국의 시민사회 내부로부터 발흥했기 때문이다.

3. 나가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개별적 여성임금차별 현상이 가부장제의 징후이듯, 성차별적 사회 속 남성의 상징적, 물리적 우월적 지위를 확증하는 제도화된 부정의로서 여성혐오의 징후로 독해해야 한다. 징후가 보이면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잘못된 진단은 또 다른 질병을 야기하고 종내는 목숨을 앗아간다.

물론 ‘여성혐오 범죄’라 명명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도 있다. 영어와 달리 crime이 강조되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용어는 범죄성을 강조하기에 단기간에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련 법 제정과 강력한 처벌 규정을 요구하고 법적 프레임 안에서 범죄성을 다투게 되므로, 결국 판단의 책임은 다시 경찰, 검찰, 법원의 지배적 남성집단의 손에 넘겨지며, 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꾀하는 어떠한 시도도 무기력하거나 시간낭비적, 재정낭비적, 비효율적인 것이라 치부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살인”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한 시민의 존재, 이들 간의 연대와 조직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이번 살해사건을 명명하는 방식인 ‘여성혐오’는 여성들의 당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물리적 폭력이 비가시적인 거대한 구조적, 상징적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시이며 이 둘 간의 연결 고리로 존재하는 불평등한(비대칭적) 젠더 질서에 대한 대중적 인지를 요청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함으로써 성차별적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당하던 약자들의 대 국민, 대 사회 호소문과 경고문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별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단선적 대책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포괄적 사회구조의 변화다. 남성에 대한 공격과 혐오 표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역습에 의해 이미 쪼그라들고 있는 가부장제의 잔여물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존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라는 권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주체의 대상과 동일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현실에서, 대상 동일시와 자아소멸의 과정을 그만두고, 자아 통합을 통해 인간-주체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책상 앞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정확히 읽어내야 할 의무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넘겨졌다.

혐오표현과 혐오범죄: 법개념과 사회적 의미, 법규제와 사회적 대응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 혐오표현(hate speech): 장애, 인종, 종교, 성적지향, 성별, 성별정체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욕·조롱·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적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동하는 것.
- 증오범죄(hate crime): 장애, 인종, 종교, 성적지향, 성별, 성별정체성 등에 근거한 적대 또는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 (① 폭행, 살인 등 일반 범죄 + ② 편견 동기[bias motive])
 - 2014년 미국 FBI 통계: 미국 5,462건. 인종 47%, 성적 지향 18.6%, 종교 18.6%, 젠더 0.6%, 민족 11.9%, 장애 1.5%, 성적정체성 1.8%
 - 1014/2015 영국(잉글랜드/웨일즈) 정부 통계: 55,528건. 인종 82%, 성적 지향 11%, 종교 6%, 장애 5%, 트랜스젠더 (1%)
 - 보편적으로 인종, 성적지향, 종교, 장애, 성별정체성, 젠더 등이 증오범죄가 될 수 있는 ‘속성’(보편적 속성)으로 간주되지만,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교육, 직업, 정치관계, 이데올로기 등이 그 속성(특수한 속성)이 되기도 함.
 -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gender-biased hate crime)
 - 복합 동기(mixed motives)도 가능 cf) 복합차별
 -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증오범죄도 가능. 예) 서울대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 사건

“증오범죄는 ‘진공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증오범죄는 공동체에 만연한 편견의 폭력적 발현이다.” (OSCE 보고서)

-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의 공통점: 소수자(집단)을 대상으로 함. 소수자로서의 속성은 원칙적으로 차별금지사유와 일치함. 혐오표현-차별행위-증오범죄의 연쇄 구조.
 - 올포트 척도(Allport’s Scale): 부정적 발언(antilocution)→ 기피 → 차별 → 물리적 공격 → 제노사이드/절멸
 - 제노사이드 8단계론: 범주화, 상징화, 비인간화, 조직화, 양극화, 준비, 절멸, 부인 (Stanton)
 - 혐오의 피라미드론: 고정관념 등 편견 → 괴롭힘/놀림 등 개인적인 편견행위 → 고용·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 → 혐오범죄 → 제노사이드 (Anti-Defamation League)
- 혐오표현금지법과 증오범죄법의 차이점: 전자는 새로운 범죄유형(또는 차별행위의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증오범죄(가중처벌)법은 폭력, 살인 등 기존의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임.
- 한국의 ‘여성’혐오표현과 ‘여성’증오범죄: 일반적인 혐오표현은 그 표적집단(특정된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예컨대, “성소수자는 치료대상”이라고 주장하거나(정체성 부정), 이주노동자들에게 “니네 나라로 가라”(구성원 지위 박탈). 하지만 ‘김치녀’로 대표되는 한국의 여성혐오는 ‘일부 여성’이 문제라면 ‘집단으로서의 여성’ 문제를 애써 피해나가는 경향이 있음. 호모포비아들이 자기 자식들도 ‘치료대상’으로 보는 것과 구분되는 부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적 다수성과, 내부의 이질성이 더해져, 여성을 ‘집단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하지만, 강남역 사건 이후의 징후는 일반적인 증오범죄, 즉, 집단적 정체성이 공고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의 파급효과와 매우 유사함. 예컨대, 피해자가 속한 집단(여성) 전체에게 가해진 충격과 공포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런 사건을 낳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활성화(여혐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 집단간 갈등(남녀 갈등 격화) 등등.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 여성들이 그동안 차별받고 억압받아왔으며, ‘소수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

2. 증오범죄의 의의

- 간접적 원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수자 희생자화
- 직접적 원인
 - 동료로서 승인받고자 하는 질투, 욕망, 적개심
 - 개별 범죄대상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없지만 그 대상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적대적 감정·생각이 있음.
 - 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 중대한 해악
 - 평등이념의 파괴(피해자 집단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선언)
 -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상처 야기
 - 피해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공포심 야기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 사회안전과 공공질서의 불안 야기 (집단 간 긴장 유발)
 - 범죄의 잔혹성
 - 가해집단의 위력과 해악
- ‘편견 동기’의 증거: 범죄대상의 속성(예: 상징적 장소 타격), 가해자가 작성한 선언문, 주변인에게 진술/고백한 내용, 소속 집단(예: KKK단), 읽은 책, 본 영화, 자주 들르는 인터넷사이트
- 프랑스 형법 132-76, 132-77조: 피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판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성질을 가진 쓴 것, 말한 것, 상징, 대상 또는 행위가 범죄에 선행되었거나 수반되었거나, 뒤따른 경우, 형벌가중요소가 된다.
- 영국 범죄와 질서파괴법 (Crime and Disorder Act 1998), 28조: 가해자가 범죄를 행하거나 행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의 인종적, 종교적 소속 집단에 근거한 적개심을 드러낸 경우에 “인종적 또는 종교적으로 가중처벌되는”(racially or religiously aggravated) 범죄가 된다.

3. 증오범죄법과 그 쟁점사항

- 증오범죄법 제정의 의의
 - 실천적 의의: 사회적 인식 제고, 수사기관/법원의 관련 인식 개선과 실무능력 제고, 관련 범죄통계 수집, 사회의 안심. cf) 증오범죄의 가시성(visibility) 제고: EU와 미국의 '증오범죄' 통계화 추진
 - 이론적 의의: 비난가능성 제고, 피해자/공동체에 대한 더 많은 해악을 초래한 데 대한 더 강한 처벌의 부과, 범죄자의 더 큰 비난가능성(편견 동기)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의 부과
- 국제법적 근거: 인종차별철폐협약 4조(인종차별적 폭력 금지); The European Commission on Racism and Intolerance (ECRI); The European Union Framework Decision on Racist and Xenophobic Crime (2008) 등
- 개별국가 입법 사례
 - 영국: 인종적으로 가중되고, 종교적으로 가중된 폭력이나 괴롭히는 행위 처벌(독립구성요건,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유럽 대부분의 국가: 편견 동기를 가진 범죄(모든 범죄 또는 지정된 범죄)인 경우, 형벌가중사유로 처리. 예) 2015년 개정된 독일 형법 제46조 제2항: “범죄자가 지니는 인종의, 외국인 배척의 또는 그 밖의 인간 경멸의 목적”을 양형사유에 추가.
 - 미국: 증오범죄통계법(1990)
- 쟁점사항
 - 특정소수자집단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차별일 수 있음. cf) 가해자도 소수자집단에 속한 경우가 있음.
 - 실효성 문제: 증오범죄법의 제정이 과연 잠재적 가해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위하효과, 범죄예방효과)를 가

저울 수 있을 것인가? 증오범죄법의 제정이 더 철저한 범죄예방활동과 엄정한 수사로 이어질 것인가?

- 증오범죄법과 법치국가원칙과의 충돌 (독일에서의 논쟁) (형사정책연구원, 2011): ‘동기’의 종류에 따라 가별성을 다르게 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 (Jacobs and K. Potter); ‘동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 cf) 행위형법 vs. 심정형법(Gesinnungsstrafrecht)
- (반시민적) 적형법 및 안전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형사정책연구원, 2011): 감시국가화, 예방국가화, 압수/수색이나 도감청, 시민과 적의 분리 (배제와 분리 정책). 예) 경찰의 행정입원제도 강화, CCTV 설치 등의 조치)

4.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 증오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형사법적 개념 정의와 강남역 사건의 사회적 파급 효과: 여성들의 ‘집단적’ 분노, 항의, 공포, 충격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 증오범죄법 또는 범죄학적 관점에서의 ‘증오범죄’ 개념 상으로는 강남역 사건이 증오범죄가 아닐 수도 있음. 하지만, 범죄 발생 이후의 벌어진 충격적인 사회적 ‘반응’과 그 ‘맥락’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전혀 삭감되지 않음. 오히려 범죄 직후 벌어진 사회적 반응은 진짜 ‘증오범죄’의 징후와 매우 유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증오범죄가 아니다’는 경찰의 주장과 이 사건의 징후와 맥락에 주목하려는 입장은 서로 양립가능하며, 굳이 다룰 이유가 없음.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논법이 얼마든지 가능함. 단, 사회적 담론으로서 ‘여성혐오범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필요함. 이것은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문제임.
- 문제의 근원인 혐오와 차별적 의식은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폭력, 직장내 성적 괴롭힘, 고용과 서비스영역에서의 각종 차별행위, 보고되지 않은 (혐오의 일부 영향을 받은) 증오 ‘적’ 범죄 등 수많은 형태의 유무형의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강력범죄 치안대책’ 문제의 단지 한 측면만을 다루는 대책에 불과함. ‘정신질환 범죄대책’ 역시, 정신질환자를 소외시키고 적대하는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데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운 대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대책이나 정신질환자에 관한 대책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책들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함.
- 증오범죄‘법’의 제정은 실제적인 범죄예방효과보다는 어떤 국가/공동체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가시화와 의제화). 다시 말해, 그런 의지의 ‘결과’로서 법이 제정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일일 수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가적 차원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달랑 법‘만’ 제정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가(특히 국가지도자)와 시민사회의 의지 표명,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지금 이곳은 시민으로서 존엄과 안전을 누리면 살 수 있는 곳이다’,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왜 이 사건을 두고 여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공포와 분노의 본질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 증오, 혐오, 차별, 적대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 문제에 절박한 심정으로 맞서야 할 필요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다면?: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증오범죄가중처벌법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 19대 국회 법안 제출 현황

-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의원 등 12인, 2013.2.20., 철회),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등 51인, 2013.2.12, 철회),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등 10인, 2012.11.06.)
- 혐오표현금지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2013.6.20.) ->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증오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2013.11.29.)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화장실법 개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우리 여성들은 ‘두려움’을 넘어 ‘연대’하며 힘을 낼 것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자로 사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아무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요.
하지만 이 곳에서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치고 떠들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약자이지 않도록.
여자라서 자랑스럽습니다.”

- 2016. 5. 21. 강남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서 만난 한 글귀 -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없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목격했습니다.
그동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침묵해왔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 2016. 5. 24. “나쁜 여자들의 밤길 걷기” 참여자의 발언내용 중 -

1.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여성혐오·폭력·차별

- 이 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 되어온 사회현상
- 국제적으로 한국은 OECD회원국이자 여성대통령(4대 사회악 척결선포), K-pop, 한류 등으로 ‘반짝반짝’하지만 실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혐오·폭력·차별 경험
- 전국의 성폭력상담현장에서 보면 연간 9만 여건⁴⁾의 상담사례 모두 여성 인권침해 사건들
-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말하고, 신고하고,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분투하며, 치유의 여정에 있는 생존자들
- 생존자 옆에서 상담·지원활동을 하며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을 하고, 의견서를 내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정부에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사회 인식을 바꾼 여성인권운동단체, 뜻을 함께하는 사회·문화·학술·정치·종교·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해오고는 있지만...

2.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1) 70여명의 여성을 간음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된 박인수 사건(1955년)

- 피고인: “결혼 약속한 적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 70명 중 단지 1명만 처녀였다”
- 1심 재판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 ---> 무죄
- 2심 재판부: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다” ---> 징역 1년
- 3심 재판부: 상고 기각, 유죄 확정

(2) 성추행 피해 순간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 과잉방어로 고소된 사건(1988)⁵⁾

-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을 여성단체들이 공동대응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해 2,3심 무죄
- 검사는 가해행위 순서 진술이 왜 다르냐고 호통을 치고, 성폭력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부도덕한 여

4)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에 의하면, 2014년 한 해동안 154개 성폭력상담소에서 총 89,975건을 상담했고, 이중 강간(35.1%), 성추행(42.3%), 기타 (22.6%) 순이었음.

(출처: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1)

5) 민경자(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역음, 한울아카데미, 40-41쪽.

자로 몰아세움. 피해자: “차라리 그날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 당시 형법 제32장의 제목 “정조에 관한 죄”⁶⁾,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제작

(3) 21년전 강간범을 살해한 사건(1991)

- 당시 성폭력은 친고죄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했음(*2013년 친고죄 폐지)

- 피해자(피고인) :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 4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하여 대응.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선고

-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

(4) 13년간 성폭력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1992)

- 당시 형사소송법 224조(고소의 제한)에 의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 56개 여성·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전국 대학생 대책위 구성

22명의 무료변호인단 구성하여 대응, 남학생 5년형, 여학생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직접적인 계기

(5) 생존자 말하기 대회(2003~)

-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입다물라고 하지만 “세상이 들어라 나는 말한다”고 공개적인 말하기 시작, 성폭력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

- 말하기 참여자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듣기 참여자들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공감과 치유의 장

(6) 20여명의 여성들을 성폭력, 살해, 암매장한 유영철 사건(2004) : 밤길되찾기 달빛시위

- 유영철 : 살해동기에 대해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굴려서...”라고 답변, 사형선고

- 여성단체 : 유영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가 유영철의 입을 빌어 여성들에게 스스로 몸단속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현상에 공분.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밤길을 걸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라는 달빛시위를 2010년까지 매년 여름 개최

(6) 용산초등생 성폭력사(2006), 조두순사건(2008), 김길태사건(2010) 등 아동성폭력사건들...

-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가해자 엄벌주의 가속화 : 신상공개강화, 전자발찌, 화학적거세법 제정

- 여성단체에서는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가해자를 ‘괴물’로 취급하며 성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의 문제로 비정치화, 병리화 하는 것을 비판

- ‘처벌강화’보다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 피해자 보호를 넘어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담당자 인권감수성교육 주장

(7)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사건(2011~현재) : 대법원은 “사랑이다”

- 27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력하여 임신·출산을 하게 한 사건

- 1심은 12년형, 2심은 9년형, 3심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무죄, 현재 재상고심중

- 340개 여성·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 결성, 서명운동, 대법원에 릴레이의견서 전달, 모의법정 등

3. 두 사건을 통해 본 시민들의 참여와 변화 - 1997년 對 2016년(20년)

(1) 성폭력 피해 입은 여대생의 자살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1997)

- 기자의 보도 : “어제 새벽 2시반쯤 00시 모 아파트 14층에서 19살 이모양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 양의 선택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MBC 뉴스데스크(1997. 9. 11)⁷⁾

- 400여명의 PC통신원들의 항의 :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게 웬 클로징 멘트입니까? 성폭행 당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죽은 연약하고 불쌍한 한 여대생과 정조관념이 희박한 요즘 세대의 여자가 왜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보시오... 이런 말도 안되는 멘트를 어떻게 그냥 내보냅니까?”, “지금은 언론이 30-40대 이상의 중장

6) 1995년 형법개정 시 여성단체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바꿀 것을 주장했으나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뀜.

7)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68738_13449.html

년이나 노년층에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지 몰라도 10-20대 젊은 층에게는 제2의 언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통신이죠”

- 여성단체들의 항의 공문 : 사과방송, 해당 기자의 인사조치 단행 요구 “... 어느 범죄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치심을 느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다... 귀 사의 방송은 이 땅의 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한층 옹호하고 강화하는 여성 억압적, 비인권적 행위였다”, 한국여성민우회 공개요구서(1997. 9. 19)
- 15개 대학 학생회 등에서 성명서 :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조관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해야한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통신과 학교에서 분노하고 있다... 사과방송을 요구한다. 사과방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가능한 물리력을 총동원할 생각이다. 이 보도로 인권을 침해받은 성폭력피해자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방송사 측의 사과방송 : “... 당시 취재기자가 이 여대생의 선택이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절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는 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많은 여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남성 위주의 편견을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1997. 9. 19)⁸⁾

(2)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해 사건’ (2016년)

- 사건의 발생 :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근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살해
- 가해자 : 3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
- 한 시민의 제안과 SNS를 통한 확산⁹⁾ : 페이스북에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지 개설(“나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에서 찾았다”). 피해자 추모운동 시작. 수 백 명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모의 공간에 헌화, 추모의 글을 담은 포스트잇 물결. 강남역 뿐만 아니라 신촌, 홍대, 대구, 청주, 전주 등 각 지역에서도 동참.
- 경찰의 발표 및 국회의 움직임 : 경찰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의 문지마 범죄”로 결론(5/22), 경찰청장 기자회견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크리스트 만들어 관리하고, 행정입원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예방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5/23),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살인원인을 조현병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박성명(5/23), 국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녀 공중화장실의 의무 분리,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발의 예정. 긴급토론회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의 원인과 대책”(5/26)
- 언론보도¹⁰⁾ : 피의자 범행당시 CCTV 여과 없이 반복 노출하는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의 공포와 분노를 유도하고, 여성혐오 논쟁보도로 사건의 본질 흐리고, 조현병 환자를 강력범죄와 연결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진단 및 비판과 대안 보도의 부재.
- 추모참여자의 신상정보 노출, 협박 세력 : 추모운동 제안자와 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이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물리적 위협 심각
- 여성단체의 공동대응 :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참여자 인권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변화를 위한 말하기는 계속된다”(5/25) & 법적 대응 예정, 긴급집담회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5/26)

(3) 주목할 만한 변화

- 기존의 단체중심의 운동에서 개인이 제안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 성폭력피해자들의 말하기(speak out): ‘여성살인’이 ‘여성폭력’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본인의 경험을 자각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공감하고 분노를 표출
- 여성혐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의 표출과 논쟁
-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추모자들에 대한 비난,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8)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68996_13449.html

9) “내가 강남역 촛불 문화제를 제안한 이유 :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성별 떠나 모두 사건 당사자... 여성 혐오 범죄에 계속해서 대응할 것” (오마이뉴스 2016. 5. 20)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11211&CMPT_CD=MMORE#cb

10) “강호순·유영철·강남역 살인사건 공통점... 언론의 편협한 시각”(여성신문, 2016. 5. 25), “조현병 편견 조장, 공영방송이 앞장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강남역 살인 사건’ 관련 방송 보도 모니터 보고서”(오마이뉴스, 2016. 5. 25)

4.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쟁점들

- (1) 공중화장실법 개정이 대안? 차별금지법 제정¹¹⁾ 등 차별, 혐오를 규제하는 법 마련해야한다.
- (2) 정신질환자의 문제¹²⁾?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이 문제이다.
- (3) 여성 對 남성의 싸움구도? 논쟁과 추모를 넘어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찾자.
- (4) 여성들은 연약한 피해자인가? 우리 여성들은 연대하여 힘을 낼 것이다!

11) “강남역 살인사건, 예방책은 ‘차별금지법’이다”(방이슬, 여성주의 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479&ion=sc1

12) <http://sadd.or.kr/stco/1779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16. 5. 25)

여성운동 현장에서 본 여성폭력·살해 실태와 운동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¹³⁾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문제

- 1)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1993)
 -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박탈”
 - 여성폭력의 범주를 가족 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제시한 여성차별에 해당됨을 확인
- 2)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음.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음.

2. 여성폭력의 실태

- 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함. 이는 곧, 가부장적 권력관계, 차별적인 문화규범,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전세계 145개국 중 115위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지수이기도 함.

2) 국가통계

- 여성폭력의 실태 전반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 없음.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며, 살인의 경우 사법통계에서 다루지고 있으나, 단순 성별분리통계에 그치고 있음.

(1) 성폭력

- 여성가족부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5%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2.7%, 남성이 0.3%로 조사됨. 여성은 가벼운 성추행 2.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로 응답한 데 반해, 남성은 가벼운 성추행 0.3% 외에는 응답자가 없었음. 그 외 성희롱 피해를 1.9%와 스토킹 피해를 0.5%는 모두 여성응답자였음.
- 평생 성폭력 피해율에서,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0.2%였음. 여성은 가벼운 성추행 18.7%, 심한 성추행 2.3%, 강간미수 1%, 강간 0.7%로 응답한 데 반해, 남성은 가벼운 성추행 1.3% 외에

13) 본 발표문은 줄고 「<문제는 “화장실”에 있지 않다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책(『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권미혁, 정춘숙, 표창원 당선자 공동주최, 2016. 5.25」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는 응답자가 없었음. 성희롱 피해율은 여성 10.1%, 남성 0.7%로 응답했으며, 스토킹은 여성 2.9%, 남성 0.6%로 응답했음.

(2) 가정폭력

-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율은 45.5%로 나타남. 그 중 신체적 폭력은 7.7%, 정서적 폭력은 37.2%, 경제적 폭력은 5.3%.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등의 성 학대 발생률은 5.4%.

- 그러나 이 조사는 성별화된 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비가시화시키고 있음. '부부폭력' 등의 용어 사용, 피해발생율이 아닌, '폭력발생율'로 하여 맥락 없이 피·가해 비율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3) 성매매

- 2013년 성매매 전국실태조사에서 남성의 56.7%(680명)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매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 그 비중은 3년 전(51.5%)보다 증가. 최근 1년간 성매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27.2%).

(4) 살인 등 범죄

- 강력범죄(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피해자의 약 90% 여성(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 단순 성별분리통계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특성, 범죄발생 상황, 범죄수사 및 처리결과를 알기 힘들.

- 한편, 청주여자교도소의 전체수형자 531명 중, 133명(30.5%)이 남편 살해(살인 중 51.4%). 이들 중 82.9%가 남편의 지속적인 고압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보고(김영희 외,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4)

3)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 실태

-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통계 부재한 상황.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해 2009년부터 여성살해 실태를 보고하고 있음. 당연히 최소치임.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657명, 미수포함 1051명. 최소 2.4일에 여성 한 명이 살해됐거나 살인미수 사건을 경험한 셈.

-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의 범행동기(변명)는 다음과 같음. "헤어지자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의심해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 "강낭콩 껍질을 벗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훗김에", "술에 취해" 등

4) 최근 언론보도 사건들

(1) 친밀한 관계(일부만 추림)

(2) 모르는 관계(일부만 추림)

2016.01.29. 70대 여성 강간 미수 살해 60대 무기징역 선고/광주일보

2016.02.05. 당구장 여주인 살해 뒤 다방 여종업원 강간 미수 40대 징역 40년/뉴스1

2016.02.28. 경주경찰, 산책하던 여성 폭행 40대 男 검거/일요신문

2016.03.07. 천안서북경찰서, 마약취해 10대 여종업원 살해·암매장 피의자 검거/천지일보

2016.04.26. "노래방비 너무 비싸"...운영자 살해한 50대 男 징역 15년/포커스뉴스

2016.04.26. 새벽길 길가던 여성에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검거/국제신문

2016.05.05. "성매매 외상" 다투다...다방 女 종업원 살해/채널A

2016.05.20. 술집서 여성에 "남자예요?, 여자예요?" 묻다가 폭행한 50대 男/연합뉴스

- 2016.05.21. 대낮 부산 도심서 술 취한 50대 낮으로 여성 등 위협/국제뉴스
- 2016.05.25. 80대 할머니 살해·성추행 '病死처리' 논란/충청투데이
- 2016.05.25. 부산서 女 행인 2명 몽둥이로 '묻지마 폭행'한 50대 男 입건/조선일보
- 2016.05.26. 대낮 부산 도심서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MBN

5)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 참여자들의 인권침해 제보 상황

- 5월 23일 밤부터 하루만에 30여건 제보
- 주요 인권침해 내용: 무단 사진촬영 및 배포, 신상털기, 외모비하, 성적 모욕, 욕설/협박/공포감 조성
- 인권침해 인지 경로: 지인 제보
- 향후 대응: 대부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심리, 의료적 지원 필요. 또한 대부분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바, 법적 대응 예정

	2016.3.31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 가두고 인두로 고문(일요시사)
	2016.3.31	데이트폭력 당한 前청와대 경호원 여친 숨져(서울신문)
3. 여	2016.3.31	"생활고 비관" 여친 등 여성 2명 살해한 20대 영장 신청(뉴시스)
성 운	2016.3.31	"사업자금 필요해" 동거녀 돈 뜯어낸 40대 구속(뉴시스)
동 의	2016.3.6	"날 무시했다" 50대 남성, 내연녀 목졸라 살해(sbs뉴스)
대 응	2016.04.03	두 얼굴의 초등학교 선생님... 17개월 아들·아내 폭행(경남신문)
과 과	2016.04.06	결별 통보' 애인 속옷 수백 벌 찢은 30대 (연합뉴스)
과 과	2016.04.10	"세상에서 제일 못한 행동" 전 여친 납치했다 불잡혀(경안일보)
제	2016.04.11	"헤어지자"는 여친에 흥기 위협...40대 男 구속(일요서울)
	2016.04.11	이별통보 전 여친 방에 가두고 흥기 협박한 40대 입건(KBS)
	2016.04.11	자기보다 늦게 귀가한 부인 흥기로 찢른 60대 영장(국제신문)
1) 여	2016.04.11	고교서 남학생 휘두른 흥기에 여학생 목·얼굴 부상(뉴시스)
성 에	2016.04.16	치매 아내 살해 70대 남편 구속(강원도민일보)
대 한	2016.04.18	여친 이별통보에 그릇 던지고 강간, 음악가에 징역형 (뉴스1)
폭 력	2016.04.18	"말다툼 하다 여친 살해" 5일 만에 자수(머니투데이)
은 이	2016.04.20	송파 아파트 주자장 여친 살해 남성, 이별 통보받은 뒤 다툼 (뉴스1)
러 한	2016.04.25	"왜 다른 남자랑 커피 마셔" 여친 폭행·협박 50대 구속(노컷뉴스)
불 평	2016.4.12	가정폭력 고소한 아내 위협, 30대 공무원 구속(연합뉴스)
등 한	2016.4.20	입대 앞두고 전 여친 고양이 소주병으로 때려 죽인 남성(인사이드)
성 별	2016.4.26	이별통보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살해(서울경제)
	2016.4.8	혼인신고 거절한 여친 손가락 자른 30대 男, 여자친구 감금하고 성폭행... 손가락까지 잘라
	2016.5.10	이별요구 애인 만취상태서 차에 감금·10km 달린 40대(뉴스1)

권력관계와 차별적 상황을 지속시키고 여성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함.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적 불평등에서 기인하지만, 성적 불평등을 유지·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담보해야 함.

2)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 “화장실문제”, “정신질환자”의 문제 등으로 규정하고/규정하고자 애쓰고, “남성혐오”, “이성혐오”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뿐더러, 왜곡·축소하는 것임.

3)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그 결과임.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옴.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등 유형별로 구별짓기보다 광의의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렇게 했을 때 여성비하, 여성혐오 등 현재까지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러나 일상적이고도 치명적이기까지 한 차별적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음.

- 피해당사자 관점에서의 여성폭력근절운동: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정당방위 사건, 성폭력피해자 무고사건 등

- 명명되지 않은 여성폭력의 명명을 통한 가시화: 데이트폭력
- 일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 먼지차별, 여성인권영화제, 페스티벌 킥 등

4) 정책 과제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불평등의 악순환은 강력한 사회적 개입으로 중단될 수 있음.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출발은 첫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며, 둘째,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 셋째, ‘보호’가 아닌 피해생존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임. 여기에 강력한 성평등 정책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함.
 -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제정, 스토킹방지법(안) 제정,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설치·운영,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여성보호’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는 여성폭력예방정책 수립, 일상의 성평등 정착 노력 필요(공교육, 미디어 등) 등

착취와 폭력의 현장에서 ‘살고싶다’¹⁴⁾는 여성들의 소박함에 대하여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993년 유엔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젠더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 묻지마 범죄와 혐오범죄의 차이와 다름 : 왜 여성인가?

강남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은 "범죄학적으로 중요·혐오범죄라 하면 특정집단을 향한 편견에 기인해 그 집단을 공격하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편견보다 특정집단에 대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증상이 우선 작용, 반감을 만들고 공격성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망상으로 인한 반감은 중요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그러면서 범행의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여성타겟 범죄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실체가 분명할 때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시대상황 및. 사회적 현상과 문화의식 및 사회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본질은 젠더불평등을 강화한 성별에 대한 차이를 차별로 구조화 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젠더폭력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여성을 침묵하게 하는 기제 / 여성에 대한 위계화

: --로 보일까봐, --가 될까봐

: **같은

: 스스로 선택했으니...,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 알려줬다...

-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리를 이야기 하는가 ?

자유주의 담론의 맥락에서는 ‘평등과 안전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여성과 소녀들이 단지 시장에서 구매되는 소비상품으로 전락되는 상황 하에서 과연 누구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인가? “선택”이라는 개념은 성매수자 업주 성매매여성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마치 평등한 관계인양 오인하게 한다.

성매매/성산업에 대한 모든 분석은 여성이 그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착취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낙인과 편견이 혐오로 : 성착취피해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이중적 태도

유영철사건(“여성들은 함부로 몸 놀리지 말고, 부유층은 각성하라”는 살인범의 말을 논평도 없이 전달해주는 언론) 강호순 사건등 연쇄살인사건들은 '특정하고 잔악무도한 개인이 벌이는 극소수의 일'인가? 그들은 왜 성매매여성을 주요하게 물색해서 그들을 살해하였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14) 2010-11년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 10여명의 연쇄자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세금, 카드수수료, 마담 수당, 결근비, 지각비 등을 제하면 막상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를 가불할 수밖에 없었고, 업주들의 일상적인 폭언과 영업압박 및 연대맞보증에 여성들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살고싶다’는 유서를 통해 그녀들의 삶의 한 자락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사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의 ‘여성혐오’는 ‘성차별’의 다른 이름이다.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쥐어 패고 있으며, 더욱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학대하고 강간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자유조차 없다. 아내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대변되는 이 같은 대 여성폭력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실체다(출처 :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 연쇄살인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 조이여울 기자 2004.07.26. 일다 칼럼 중)

- 많은 여성들은 성매수 남성에게서 살해 당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댓가를 지불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서, 자신을 무시해서’ 등등의 이유로 자신들을 집행관의 위치로 둔갑시킨다. 또한 업주나 손님으로부터의 일상적인 인격무시와 폭언, 폭행 및 성폭력, 살해위협들이 상존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나간다.¹⁵⁾

‘성매매’를 오히려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성매매요구를 거부하는 여성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성매매여성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는 현장에서...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수많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서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고 그 결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아가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온정적이기까지 하였다.

최근의 살해사건 :

- 1) 여수유홍업소 여성사망사건 : 20대 여성이 업주로부터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폭력과 폭행, 성매매강요, 인권침해를 받아오다 결국 사망한 사건(2015년)
- 2) 만 13세 청소년 성착취피해자 : 성인남성 6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성착취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현실
- 3) 성매매여성에게 부여되는 수많은 낙인과 차별은 필요에 따라 여성일반으로 확대되기도 했다가 일반여성 과 성매매여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 4) 노래방 도우미여성을 자신이 마음대로 불러내서 돈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남성이 이를 거절하는 여성을 구타하고 쓰러진 상태에서 자신의 차에 태워 몇시간을 감금하다 병원앞에 버려두고 간 사건(당시 재판부는 폭행·감금을 저지른 범인의 취업이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정의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함)
- 5) 관악구 봉천동 모텔에서 14세 청소년 성착취피해자를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2015년)

‘성매매’를 오히려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성매매요구를 거부하는 여성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성매매여성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손쉽게 저질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연속적인 폭력의 문제를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여성살해를 정당화 시킨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을 지속시키는 현실에서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사회적 약자)들과 살해된 여성들의 사회적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때이다.

15) M. 팔리는 2008년과 2011년 논문을 통해 성을 사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위협적인 행동과 기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남성 중 5분의 1 이상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 느끼는 권력을 즐기며 일단 돈을 지불하면 자신이 산 여성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22%). 이들은 또 성을 구매하지 않는 남성들보다 포르노그래피를 즐기는 경향이 훨씬 높았고,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결과 자신의 성적 취향이 바뀌었다고 답했다(Farley M. et al. (2011), "Attitudes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Men Who Buy Sex in Scotland",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March 2011, 2014 유럽의회 보고서에서 재인용)

- **살해되지 않기 위해** : 혐오에 저항하고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몸짓, 행동이 표출되어야 한다. 젠더기반폭력은 사회, 문화, 구조적 원인이 깊이 자리 잡은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OO녀'는 어떻게 탄생하고 죽어가는가 - 한국 언론의 젠더의식 부재

최지은 ([아이즈] 선임기자)

- 지난 5월 21일 열린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 집회 현장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성평등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이 이루어졌다. '대장내시경녀'(대장내시경 검진 중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의사가 구속된 사건), '트렁크녀'(납치 살해된 뒤 자동차 트렁크에서 시체로 발견된 여성), '나영이 사건'(조두순의 아동성폭행 사건) 등 가해 남성보다 피해 여성을 부각시키면서 언론이 확산시켜온 'OO녀' 프레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점점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현재까지 약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 많은 언론들이 성인 남성들과 여성 청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경우 기사의 제목은 '여고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성이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OO녀'로 제목을 단다, "성폭행 피해女 자살했는데 가해자는 반성했다고 징역 3년?"(헤럴드경제)이라는 제목에서 여성은 '피해자'도 '피해 여성'도 아니고 '피해녀'일 뿐이고 개그맨 유상무 씨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 여성이 법적 대응을 하면 '신고녀', '고소녀'로 칭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인 남성의 성별은 표기되지 않는다. 남성을 인간의 기본값으로 두고 '여성'을 변수로 놓는 것은 차별적이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헤드라인마다 '여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범죄, 치정, 사치, 무개념 등의 이미지)

-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의 경우 초기 보도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라는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제목에 실었고, "목사 꿈꾸던 신학생" 등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잃은 미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뉘앙스의 제목도 흔히 볼 수 있다. ("의사의 꿈 좌절"이나 "성매매 과거에 발목 잡혀" 등) "바람 피운 여친 살해"

- "성범죄 보도에 있어 "가족끼리는 괜찮아" "임신했나 확인" "야동 같이 보자" 등,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러 때 했던 그대로 인용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범행 상황을 묘사한다.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성의 몸을 부각시키면서 추행 및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상황을 이미지로 재현해서 기사에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포르노적인 소비는 독자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서는 성적인 농담과 2차가해성 댓글을 흔히 볼 수 있다.

-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섹시백'에 반한 성추행남 '에잇 못참겠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몰카 범죄 관련 기사.) '변태 친오빠의 취미'(모 언론사 SNS) '나쁜 손'(성추행 관련 기사) 같은 장난스런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뉴스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언론사들이 '드립'을 위해 여성 관련 사건이나 범죄들을 농담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페이지뷰를 위해서라 해도, 여기에 악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군소언론에서만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 국가기간통신사, 주요일간지 등이 적극 동참한다.

- 이처럼 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풍토가 공기처럼 퍼져 있는 언론 환경에서 자극적이고 의도가 뻔한 제목과 기사들은 여성혐오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한다. 이를테면 ["말조심해야지" 강남 문지마 살인에 위촉된 남성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여성이 살해당함으로써 수많은 여성들이 공포와 분노에 떨고 있는 사건을 놓고 남성들이 '위촉된다'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말조심'이라는 표현으로 남성들을 자극하는 식이다.

- 한국기자협회 정관에는 인권보도준칙,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 기준, 성폭력 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 안에는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

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언론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의 문제만 부각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이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등 공정하고 윤리적인 원칙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언론이 여성을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저지르는 2차 가해와 같다. 이처럼 현재까지 언론 내부의 자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피해상태나 범행 수법을 묘사하면 안 된다.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정도에 그친다.

- 결국 언론 내부에서 자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직접 움직이기도 한다. 지난 4월 [연합뉴스]에서 소라넷 가상의 운영자 시점으로 쓴 기사에 대해 항의방문을 하러 간 시민들이 있었고, 이후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기사 제목을 쓸 때 여성이나 소수자 비하를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물론 ‘OO녀’만을 피한다고, 가해자에 감정이입한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젠더 의식이 바로잡히는 것은 아니다. 이후 [연합뉴스]에서는 “비혼이 대세? 외국 처녀라야 딱지 떼는 총각에겐 상처”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시 실렸다.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통신사에서 최소한의 보도윤리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연합뉴스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 언론들의 다수가 젠더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이, 혹은 왜곡된 의식을 일부러 퍼뜨리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실질적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여성혐오 풍토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언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언론이 과연 공적 매체로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사회 각 분야의 부조리와 병폐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정말로 있는가.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묻고 싶다.

MEMO

MEMO